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지원 조례안

(이광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2026. 2. 13.

발 의 자: 이광규·이시훈·여봉무
정재호·김하영·이륜구
박희연 의원

1. 제정 이유

최근 개인적 이해관계나 합리적 목적과 무관하게 분노·피해의식 등 이상동기에 의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는 예측이 어렵고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발생하여 주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

특히 유동 인구가 많고 다중 이용시설과 소상공인 업소가 밀집한 종로구의 경우 이상동기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선제적 예방과 대응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에서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용어 정의(안 제2조)

나. 이상동기 범죄 예방 사업 지원(안 제3조)

- 이상동기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
-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각종 방법 시설 확충 및 환경 개선 등

다. 유관 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안 제4조)

3. 참고 사항

가. 예산이 따르는 사항: 이상동기 범죄 예방 지원 사업(안 제3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다. 입법 예고: 2026. 1. 2. ~ 1. 21.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적 이해관계나 합리적 목적과 무관한 이상동기에 의해 발생하는 범죄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상동기 범죄 예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지역사회 구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이상동기 범죄”란 개인의 합리적 이해관계나 전통적인 범죄 동기로 설명하기 어려운 심리적·사회적 요인에 의해 때와 장소, 상대를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살인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무차별적인 범죄 형태를 말한다.

제3조(사업 지원)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이상동기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
2.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각종 방법 시설 확충 및 환경 개선
3. 그 밖에 구청장이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하여 경찰서,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